

2016. 6. 14.(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손 윤 목**

#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총괄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서 P9>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6,500천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표-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불용률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26,500	26,500	0	0	0.0%
충청북도	6,803,752	6,419,967	336,374	47,411	0.7%

-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26,500천원을 지출하였음.

<표-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500	26,500	0	0

## 2. 검토의견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43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의 일반예비비와(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여야 하겠음.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국고보조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26,500천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였음.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